

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 등에 대한 학점인정의 기준 (제8조제2항 관련)

1. 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

학위를 취득한 교육 과정이 해당 교원이 담당하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취득학점의 전부를,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취득학점의 2분의 1을 학점으로 인정한다.

2. 자격취득

대 상 자 격			인 정 학 점	직무 관련 학점인정률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자격	기술계 및 기능계 기술자격	기능사	3	－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인정학점 전부 － 직무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인정학점의 2분의 1
		기사	5	
		기능장 및 기술사	10	
	서비스계 기술자격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직무능력 인증 자격			3	

3. 연수이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다.

4. 연구활동실적

(단위: 학점)

구 분	인 정 학 점		
	전국 규모	시·도 규모	시·군·구 규모
가. 연구대회 입상실적	6	4	
나. 연구·시범·실험학교 참여실적	1년과정: 3 2년과정: 6	1년과정: 2 2년과정: 4	1년과정: 1 2년과정: 2
다. 시·도교육청 주관 연구 교사 입상실적		1년과정: 4 2년과정: 6	
라. 과학발명품 전시회 입상	6	4	
마. 저작물 또는 학회지 연 구보고서의 발표실적	- 저작물: 편당 5 - 학회지 연구보고서: 편당 3		
비 고			
1. 나목의 경우 학점 인정은 교육감 및 국립학교의 장이 승인한 교원만 해당한다.			
2. 마목의 경우 학점인정률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직무 관련 학점인정률

- 1)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인정학점 전부
- 2) 직무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인정학점의 2분의 1

나. 공동으로 발표한 저작물 및 연구보고서에 대한 개인별 학점인정률

- 1) 2명이 공동으로 저작한 경우: 인정학점의 100분의 60
- 2) 3명이 공동으로 저작한 경우: 인정학점의 100분의 40
- 3) 4명 이상이 공동으로 저작한 경우: 인정학점의 100분의 30